

제3장 단지계획기준

제1절 단지구성 시설 및 설치기준

1.1 단지구성시설

1.1.1 공동주택 (주택법 제2조, 동법시행령 제2조, 건축법시행령 별표1)

건축물의 벽·복도·계단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서 다음과 같다.

종 류	범 위
아 파 트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
연 립 주 택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 제외)이 660㎡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다세대 주택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이 660㎡ 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기 숙 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 가정보육시설을 포함하며, 층수를 산정 함에 있어서 1층 전부를 피로티 구조로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1.1.2 부대시설(주택법 제2조, 건축법 제2조 제3호, 주택건설규정 제4조)

· 주차장 · 관리사무소 · 담장 · 주택단지안의 도로
· 건축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설비 전기 · 전화 · 가스 · 급수 · 배수(配水) · 배수(排水) · 환기 · 난방 · 소화 · 배연 및 오물처리의 설비와 굴뚝 · 승강기 · 피뢰침 · 국기게양대 · 공동시청안테나 · 유선방송 수신시설 · 우편물 수취함
· 기타 이의 시설 · 설비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 보안등 · 대문 · 경비실 · 자전거보관소, 조경시설 · 옹벽 · 축대 · 주택단지 안의 도로, 안내 표지판 · 공중전화 · 공중화장실, 저수시설 · 지하양수시설 · 대피시설,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 오수처리시설 · 단독정화조, 소방시설 · 냉난방공급시설 (지역난방공급시설 제외), 기타 건교부령이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

1.1.3 복리시설(주택법 제2조,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5조)

· 어린이놀이터 · 근린생활시설 · 유치원 · 주민운동시설 · 경로당
·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기타 입주자들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공동시설) ·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장 의사 · 총포판매소 ·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 · 종교집회장과 그 종교집회장안에 설치하는 납골당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 가목의 규정)

- 판매 및 영업시설중 소매시장·상점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
-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
- 업무시설중 금융업소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
- 공동작업장·아파트형공장·사회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을 포함)
- 주민공동시설
- 도시계획시설인 시장
-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공동시설 또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거주자의 생활복리 또는 편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1.1.4 간선시설(주택법 제2조, 시행령 제24조, **시행령별표2**)

주택단지(2이상의 주택단지를 동시에 개발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주택단지) 안의 기간시설을 당해 주택단지 밖에 있는 동종의 기간시설에 연결시키는 시설(다만, 가스시설·통신시설·지역난방시설의 경우 주택단지안의 간선시설포함)

간선시설	설치범위
도로	주택단지밖의 기간이 되는 도로로부터 동 주택단지경계선(단지의 주된 출입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로 하되, 그 길이가 20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에 한한다.
상하수도시설	주택단지밖의 기간이 되는 상·하수도시설로부터 주택단지경계선까지의 시설로 하되, 그 길이가 20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에 한한다.
전기시설	주택단지밖의 기간이 되는 시설로부터 주택단지의 단지경계선까지로 한다. 예외 지중선로는 사업지구밖의 기간이 되는 시설로부터 가장 가까운 주택단지(사업지구안에 1개의 주택단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단지를 말한다)의 경계선까지로 하되, 「임대주택법」 제1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산업자원부장관과 따로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가스시설	주택단지밖의 기간이 되는 가스공급시설로부터 주택단지의 경계선까지로 한다. 예외 단지 안에 취사 및 개별난방용(중앙집중식난방용을 제외한다)으로 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정압조정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정압조정실까지로 한다.

간선시설	설치범위
통신시설 (세대별전화시설)	관로시설은 주택단지밖의 기간이 되는 시설로부터 주택단지경계선까지, 케이블 시설은 동 단지밖의 기간이 되는 시설로부터 동 단지안의 최초 단자까지로 한다. 예외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케이블시설의 경우 그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하여는 건교부장관이 정통부장관과 따로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의한다.
지역난방시설	주택단지밖의 기간이 되는 열수송관의 분기점(당해 주택단지에서 가장 가까운 분기점을 말한다)으로부터 주택단지내의 각 기계실입구 차단밸브까지

1.1.6 도시계획시설(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 7호)

기반시설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 기반시설의 종류(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 6호)

시설의 구분	법률에서 정한시설	시행령에서 정한시설
교통시설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	자동차정류장, 궤도, 식도, 운하,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공간시설	광장·공원·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유통·공급시설	유통업무설비·수도·전기·가스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시장,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열공급설비
공공·문화체육시설	학교·운동장·공공청사·문화시설·체육시설	도서관,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방재시설	하천·유수지·방화설비	저수지, 방풍설비, 방수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
보건·위생시설	화장장·공동묘지·납골시설	도축장, 장례식장, 종합의료시설,
환경·기초시설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폐차장

※ 짙은 글씨의 기반시설은 세분할 수 있다.(시행령 제2조)

1.2 부대복리시설 설치기준

구분	시설명	단위	설치기준 및 규모	관계법																
도로 및 교통 시설	주차시설	대	공동주택단지 · 다음 표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되, 세대당 최소 설치기준은 1대(전용면적이 60㎡이하인 경우 0.7대)이상	규정 제27조																
			<table><tr><th rowspan="2">주택규모별 (전용면적)</th><th colspan="4">주차장설치기준 (대/㎡)</th></tr><tr><th>서울</th><th>광역시및 수도권내 시지역</th><th>시지역및 수도권내 군지역</th><th>기타지역</th></tr><tr><td>85㎡ 이하</td><td>1/75</td><td>1/85</td><td>1/95</td><td>1/110</td></tr><tr><td>85㎡ 초과</td><td>1/65</td><td>1/70</td><td>1/75</td><td>1/85</td></tr></table> · 지하주차 설치 의무비율 특별시·광역시 및 수도권내의 시지역에서 3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 60㎡ 이하 : 30% 이상 - 60㎡ 초과 85㎡ 이하 : 40% 이상 - 85㎡ 초과 : 60% 이상 *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단지여건 등의 사유로 지하주차장 설치가 곤란한 경우는 제외		주택규모별 (전용면적)	주차장설치기준 (대/㎡)				서울	광역시및 수도권내 시지역	시지역및 수도권내 군지역	기타지역	85㎡ 이하	1/75	1/85	1/95	1/110	85㎡ 초과	1/65
	주택규모별 (전용면적)	주차장설치기준 (대/㎡)																		
		서울	광역시및 수도권내 시지역	시지역및 수도권내 군지역	기타지역															
85㎡ 이하	1/75	1/85	1/95	1/110																
85㎡ 초과	1/65	1/70	1/75	1/85																
국민임대주택 주차장 설치기준	단위:대/세대	<table><tr><th>구분 (전용면적)</th><th>특별시</th><th>광역시 및 수도권내 시지역</th><th>시지역 및 수도권내 구지역</th><th>기타 지역</th></tr><tr><td>50㎡미만</td><td>0.9</td><td>0.85</td><td>0.8</td><td>0.75</td></tr><tr><td>50㎡이상~ 60㎡미만</td><td>1.0</td><td>0.95</td><td>0.9</td><td>0.85</td></tr></table>	구분 (전용면적)	특별시	광역시 및 수도권내 시지역	시지역 및 수도권내 구지역	기타 지역	50㎡미만	0.9	0.85	0.8	0.75	50㎡이상~ 60㎡미만	1.0	0.95	0.9	0.85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주거환경자문회의의결사항)		
구분 (전용면적)	특별시	광역시 및 수도권내 시지역	시지역 및 수도권내 구지역	기타 지역																
50㎡미만	0.9	0.85	0.8	0.75																
50㎡이상~ 60㎡미만	1.0	0.95	0.9	0.85																
	자전거보관소	대	공동주택단지 · 수도권·20만이상 도시지역 : 100세대 마다 15대 · 시·군지역 : 100세대 마다 25대	주공 자체기준																
	진입도로	m	공동주택단지 · 주택단지는 기간도로와 접하거나 기간도로로부터 당해 단지에 이르는 진입도로 확보 단위 : m <table><tr><th>주택단지의 총세대수</th><th>기간도로와 접하는 폭 또는 진입도로의 폭</th></tr><tr><td>300 미만</td><td>6 이상</td></tr><tr><td>300 이상 500 미만</td><td>8 (12) 이상</td></tr><tr><td>500 이상 1000 미만</td><td>12 (16) 이상</td></tr><tr><td>1,000 이상 2000 미만</td><td>15 (20) 이상</td></tr><tr><td>2,000 이상</td><td>20 (25) 이상</td></tr></table> * 주택단지가 2 이상이면서 당해 주택단지의 진입도로가 하나인 경우 그 진입도로의 폭은 당해 진입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주택단지의 세대수를 합한 총 세대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 * 진입도로가 2 이상으로서 2개의 진입도로 폭의 합계가 위 표 ()안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이 경우 폭 4m 이상 6m 미만인 도로는 기간도로와 통행거리 200m 이내인 때에 한하여 이를 진입도로로 간주	주택단지의 총세대수	기간도로와 접하는 폭 또는 진입도로의 폭	300 미만	6 이상	300 이상 500 미만	8 (12) 이상	500 이상 1000 미만	12 (16) 이상	1,000 이상 2000 미만	15 (20) 이상	2,000 이상	20 (25) 이상	규정 제25조				
주택단지의 총세대수	기간도로와 접하는 폭 또는 진입도로의 폭																			
300 미만	6 이상																			
300 이상 500 미만	8 (12) 이상																			
500 이상 1000 미만	12 (16) 이상																			
1,000 이상 2000 미만	15 (20) 이상																			
2,000 이상	20 (25) 이상																			

구분	시설명	단위	설치기준 및 규모	관계법								
도로 및 교통 시설	주택단지 안의도로	m	공동주택단지 · 주택단지에는 다음 표 기준에 의한 도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도로를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100세대 미만인 경우라 하더라도 막다른 도로로서 그 길이가 35m를 넘는 때에는 그 폭을 6m로 하여야 한다. 단위 : m	규정 제26조								
			<table><tr><th>이용 세대수</th><th>도로의 폭</th></tr><tr><td>100 미만</td><td>4 이상</td></tr><tr><td>100 이상 300 미만</td><td>6 이상</td></tr><tr><td>300 이상 500 미만</td><td>8 이상</td></tr><tr><td>500 이상 1000 미만</td><td>12 이상</td></tr><tr><td>1,000 이상</td><td>15 이상</td></tr></table> * 이용 세대수 : 기간도로 또는 진입도로에 이르는 경로에 따라 단지안의 도로(최단거리를 말한다)를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세대수 * 주택단지 안의 폭 8m 이상인 도로에는 폭 1.5m 이상의 보도 설치 * 주택단지 안의 도로로부터 건축물까지의 출입로의 폭은 당해 건축물 주출입구의 폭 이상 설치		이용 세대수	도로의 폭	100 미만	4 이상	100 이상 300 미만	6 이상	300 이상 500 미만	8 이상
이용 세대수	도로의 폭											
100 미만	4 이상											
100 이상 300 미만	6 이상											
300 이상 500 미만	8 이상											
500 이상 1000 미만	12 이상											
1,000 이상	15 이상											
복지 및 후생 시설	관리사무소	㎡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 10㎡+(세대수-50)×0.05㎡이상 · 100㎡ 초과시는 100㎡로 할 수 있음 * 관리사무소 최소면적 : 66㎡ (자체기준) * 관리사무소는 관리업무의 효율성과 입주민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규정 제28조								
	경로당	㎡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 40㎡+(세대수-150)×0.1㎡이상 (거실 또는 휴게실의 면적) · 300㎡ 초과시는 300㎡로 할 수 있음 * 일조 및 채광이 양호한곳에 설치 * 노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공용의 다목적실(일반거주자와 교류 또는 공동활동을 할수 있는 시설을 포함한다)과 남·녀로된 실을 확보할 것 * 급수·취사시설·화장실 및 부속정원 설치	규정 제55조								
	보육시설	㎡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 상시 20인 이상(50세대 이상인 경우 40인)의 영유아를 보육할 수 있는 시설규모를 갖춘 영유아 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을 주택의 사용검사시까지 설치 * 완화규정 : 당해 주택단지로부터 300m 이내에 보육시설이 있는 경우 등 4항목 * 시설기준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별표1) - 보육실 전체 규모 : 4.29㎡/인 (300~500호미만:최소 85.8㎡이상,500호이상:171.6㎡이상) - 거실,포복실,유희실 : 2.64㎡/인 (300~500호미만:최소 52.8㎡이상,500호이상:105.6㎡이상) - 유아놀이터(영유아 50인이상을 보육하는 시설에 한함) : 2.5㎡/인 (최소125㎡) * 52인이상 규모의 보육실이 설치의무대상이나 5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단지에 설치권장단,지역적특수성에 따라 옥내놀이터또는 인근놀이터로 활용가능 * 보육실은 1층에 설치해야 한다	규정 제55조								
	문고	㎡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경기도:100세대 이상) ·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시행령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한 문고 * 시설기준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시행령 별표 1) - 시설규모 : 전용면적 33㎡ 이상 - 열람석 : 6석이상 - 자료 : 1,000권이상	규정 제55조								

구분	시설명	단위	설치기준 및 규모	관계법
복지 및 후생 시설	주민공동시설	m²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 50m²+(세대수-300)×0.1m² 이상 · 300m² 초과시는 300m²로 할 수 있음	규정 제55조
근린 생활 시설	근린생활시설 소매시장 상점	m²	공동주택단지 · 세대수×6m² 이하 · 500m² 미만시는 500m²로 할 수 있음	규정 제50조
체육 및 놀이 시설	어린이놀이터	m²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 100세대 미만 : 세대수×3m²(시·군 지역 2m²)이상 · 100세대 이상 : 300m²(시·군 지역200m²)+(세대수-100) ×1m²(시·군 지역 0.7m²)이상 * 완화규정 : 300세대 미만의 주택단지로서 당해 단지 안이나 단지와 접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어린이공원이 이 영의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거나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 시까지 설치될 예정인 경우에는 제외 * 시설기준 - 최소면적 : 개소당 300m²(시·군 지역 200m²) - 최 소 폭 : 9m(면적이 150m²미만인 경우 6m) - 이격거리(150m²이상인경우) : 개구부 있는 외벽(5m), 개구부 없는측벽,인지선(3m),도로,주차장 등(2m)	규정 제46조
	휴게시설	개소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 500세대 이하 : 1개소 이상 · 500세대 초과 : 초과 500세대마다 1개소 추가	규정 제29조
	주민운동시설	m²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 300m²에 500세대를 넘는 200세대마다 150m²를 더한 면적 이상의 운동장을 설치하고, 그 안에 체육시설 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규정에 의한 실외체육시설을 1개소 이상 설치	규정 제53조
안내 및 조경 시설	안내표지판	개소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와 그 주변 · 단지유도 표지판 · 단지입구 표지판 · 단지종합 안내판 · 단지내 시설표지판 · 동번호 (단지내 2동 이상의 공동주택이 있는 경우) · 게시판, 머릿돌 또는 기록탑	규정 제31조
	조경시설등	%	공동주택단지 · 단지면적의 30%에 해당하는 면적(공동주택 1층에 주민공용 피로티 설치시 단지면적의 30%에 해당하 는 면적에서 단지면적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피로티 면적의 1/2에 해당하는 면적을 공제한 면적)의 녹지 확보	규정 제29조

구분	시설명	단위	설 치 기 준 및 규 모	관 계 법						
안내 및 조경 시설	조경시설등	%	1. 시장과 주택을 복합건축물로 건축할 경우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에 의한 상업지역 안에 주택 건설시 3. 세대당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을 전체 세대수의 2/3 이상 건설하는 경우 건축법 32조 규정 준용하되 조례로 위임 * 내부기준 : 20%이상(단계(일)7120-10007(00.4.18))	규 정 제29조 주공 자체기 준						
	커뮤니티 공 간		대지면적의 2%이상 중앙광장 또는 마당등 커뮤니티 공간 구성 (주단(이)8121-30915(02.10.30))	주공 자체기 준						
교육 시설	유 치 원	-	2,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 대지 또는 건축하여 공급 · 설치완화 : 통행거리 300m 이내에 유치원이 있는 경우 등 4항목 · 용도완화 : 유치원외의 용도의 시설과 복합으로 건축가능(단,바닥면적중 유치원용도가 1/2이상 되어야하며, 타시설과출입구,계단,복도,화장실을 분리할 것)	규 정 제52조						
공급 시설	비상급수 시 설	톤	공동주택단지 ·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 기준에 적합한 비상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지하양 수시설 또는 지하저수조시설 설치 ()는 시·군 지역 <table border="1"><tr><td>구 분</td><td>지하저수시설</td><td>지하양수시설</td></tr><tr><td>설치기준</td><td>1.5(1.0)톤 / 세대</td><td>0.2(0.1)톤 / 세대·1일</td></tr></table> * 지하저수시설 설치시는 옥상물탱크 및 고가수조 의 저수량(매 세대당 0.5톤까지 산입)을 포함 * 지하양수시설 설치시는 매 세대당 0.3톤(자체기준 : 0.5톤)의 지하저수조를 함께 설치	구 분	지하저수시설	지하양수시설	설치기준	1.5(1.0)톤 / 세대	0.2(0.1)톤 / 세대·1일	규 정 제35조
	구 분	지하저수시설	지하양수시설							
	설치기준	1.5(1.0)톤 / 세대	0.2(0.1)톤 / 세대·1일							
가스공급 시 설	-	공동주택단지 ·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한 지역에 주택을 건설하거나 액 화 석유가스를 배관에 의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건설하 는 경우 : 각 세대까지 가스공급설비 시설 · 기타지역 :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외기에 면한 곳에 액화석유가스 용기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 *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500세대 이상 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대하여는 당해 지역의 가스공급계획에 따라 가스저장시설을 설 치하게 할 수 있다.	규 정 제34조							
난방설비	-	공동주택단지 · 6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난방설비 : 중앙집중난방 방식(지역난방공급방식 포함) * 건축법 시행령 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난방 설비를 하는 경우는 제외 · 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발코니등 세대 안에 냉방 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 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집중냉방방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규 정 제37조							

구분	시설명	단위	설치기준 및 규모	관계법
기타 시설	폐기물 보관시설	개소	공동주택 단지 ·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설치 * 용기설치기준 (지자체에 조례에 의거 설치) - 최소면적 : 1개소 (5×2.3m) - 설치장소 : 차량의 접근이 용이하고 주민의 이용에 편리한 곳	규정 제38조
	배기설비	-	공동주택 단지 · 부엌·욕실 및 화장실에는 바깥의 공기 에 면하는 창을 설치하거나 건물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기설비를 하여야 한다. · 공동주택의 각세대에 설치하는 환기시설의 설치기 준등은 건축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규정 제44조
	소방시설	-	공동주택 단지 · 소방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	규정 제41조
	급배수시설	-	공동주택 단지 · 수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를 설치	규정 제43조
	전기시설	kW	· 단위세대 부하산정 - 60㎡ 미만 : 3kW / 세대 - 60㎡ 이상 : 3kW에 초과 10㎡마다 0.5kW 가산 · 전기수전 : 6층이상으로 승강기가 설치되는 경우 특고압수전(자체수변전설비)설치	규정 제40조
	통신시설	-	공동주택 단지 · 세대마다 전화설치장소(거실 또는 침실)까지 정보통 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내통신선로설비 설치 · 경비실을 설치하는 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경비실 과 통화가 가능한 구내전화 설치 · 세대마다 초고속정보통신을 할 수 있는 구내통신 선로설비 설치	규정 제32조
	보안등	개소	공동주택 단지 · 어린이놀이터 및 도로(폭 15m 이상인 도로의 경우 는 도로의 양측)에는 보안등 설치(간격 50m 이내) · 단지진입구에는 진입구(열주)조명 설치 · 각시설별,장소별 조명시설 설치 - 도로,주보행로 - 체육시설,놀이터,공원 - 산책로,조깅코스,정원 - 분수,벽천,수경시설,수목,조형물 등	규정 제33조
	방송수신을 위한 공동수신 설비	-	공동주택 단지 ·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 텔레비전·에프엠(FM)라디오 방송 공동수신안테 나 및 그 부속설비 설치 - 종합유선방송의 구내전송선로설비 설치 - 각세대에는 텔레비전방송 및 에프엠(FM)라디오방 송 공동수신안테나와 연결된 단자를 2개소이상 설치(단 전용60㎡이하는 1개소로 할 수 있다.)	규정 제42조
	방송시설	-	공동주택 단지	전기설계 기준

※ 세대당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주택으로서 저소득 근로자를 위하여 건설되는 근로자 주택
및 세대당 전용면적이 50㎡ 이하인 주택으로서 정부의 예산으로 건설되는 영구임대주택의
건설기준과 부대·복리시설의 설치기준은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칙 별표 1에서 각각 정함